행 정 자 치 부
주 의 요 구

제　　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관 선정 소홀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　　용

강원도 ○○과에서는 2015. 3. 20.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거나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.

[표] 연차별 추진계획

구분	계	2015	2016	2017	2018	2019	비고
단지(개소)	667	140	133	133	133	128	
금액(백만원	1,000	210	200	200	200	190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

다만,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, 세대수, 안전등급,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수립 및

시행,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또한, 같은 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를 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 강원도 ○○과에서는 2015. 5. 26.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책 교육자료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게 하여야 함에도, 비용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유로 지역 건축사 협회 등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시·군에 시달하였다.

이에 따라 원주시 등 9개 시·군에서는 안전점검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게 하여야 함에도, 표와 같이 부적절하게 지역 건축사 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다.

[표] 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약현황 (단위 : 천원)

시군	계 약 명	계약금액	계약일자	계약업체	담당자 (성명, 연락처)	계약 방법
계	11건					
원주시	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	15,755 (변경 17,843)	2015.00.00 (변경 2015.00.00.)	㈜○○○○○○	○○○, 000-0000	수의
삼척시	“	7,700	2015.00.00	○건축사	○○○, 000-0000	“
		8,800	2015.00.00	○○건축사		
		9,000	2015.00.00	성지건축사		
영월군	“	15,600	2015.00.00	㈜○○○○○○	○○○, 000-0000	“
철원군	“	4,500	2015.00.00	(합자)건축사 ○	○○○, 000-0000	“
화천군	“	6,900	2015.00.00	○○건축사	○○○, 000-0000	“
양구군	“	8,670	2015.00.00	○○○건축사	○○○, 000-0000	“
인제군	“	13,380	2015.00.00	○○건축사	○○○, 000-0000	“
고성군	“	5,330	2015.00.00	○○건축사	○○○, 000-0000	“
양양군	“	8,100	2015.00.00	○○○○건축사	○○○, 000-0000	“

[표]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약현황 (단위 : 천원)

시군	계 약 명	계약금액	계약일자	계약업체	담당자 (성명, 연락처)	계약 방법
계	5건					
원주시	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	45,800	2016.07.25	㈜○○○○○○	○○○, 000-0000	입찰
삼척시	-	미계약				
영월군	-	미계약				
평창군	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	11,280	2016.05.23	㈜○○○○○○	○○○, 000-0000	수의
정선군	”	13,950	2016.07.07	㈜○○○○○○	○○○, 000-0000	“
철원군	”	10,500	2016.05.20	○○건축사	○○○, 000-0000	“
		16,500	2016.07.18	○건축사		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향후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,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